

주간 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年01月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 전 유효기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계약의 목적

더나은 주간보호센터와 수급자와(보호자)의 계약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를 통하여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함이다.
2. 수급자에 대하여 물질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함이다.
3. 수급자에 대하여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4.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책임의 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 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갑)와 서비스수급자(을)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① “을”의 안전한 더나은 주간보호센터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병간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더나은 주간보호센터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③ 더나은 주간보호센터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④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 ⑥ 기타 더나은 주간보호센터의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 인의 권리

- ① 더나은 주간보호센터 비 급여 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 요구의 권리
- ② 더나은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구권리
- ③ 더나은 주간보호센터 이용 시 수급자의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 통보 요구권리

4. 신원인수 인의 의무

-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 비용 부담 의무
-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병간호,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건강이 더나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못할 만큼 위중할 때
-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더나은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 5.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6. 5일 이상 결석을 하였을 때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 때 15일까지 유보할 수 있으나 퇴소를 유보할 때는 5일 초과 유보일 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입소 비용과 수납 액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제를 유보할 수 있다.
-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및 비용변경

-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식대 및 비 급여 항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4年 01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주간 보호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등급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39,810	36,850	34,020	32,470	30,920	30,92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53,360	49,420	45,620	44,070	42,500	42,50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66,360	61,480	56,760	55,210	53,640	53,640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73,110	67,720	62,570	61,000	59,450	59,450
13시간 초과	78,400	72,630	67,100	65,540	63,990	63,99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0 %
기타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
저소득층(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주간 보호 비급여 항목 급여비용(원) (30일 기준)

구분	비용	산출 근거	금액
음식 재료비	2회 5,000원	1일 2회*5,000원*30일	150,000원
간식비	1회 500원	1일 1회*500원*30일	15,000원
이·미용비	월 1회 0원		0원
기타	실비		실비

○ 비급여 비용 본인 부담 기준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음식 재료비 등이나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제반 사항의 비용에 대하여는 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용료 변경 절차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및 요양급여 수가 변경 시 즉시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적용하는 일자에 맞게 비용을 변경한다.
2. 비급여 항목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보호자에게 변경 사유를 알리고 의견 청취 후 비용을 조정한다.

□ 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세면 도움, 구강 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이동 도움
2. 신체기능 유지-신체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3. 인지기능 유지-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4. 건강지원 서비스-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 및 치매 관리·간호, 질병 예방관리
5. 재활치료 지원 서비스-일상생활 동작 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 훈련, 작업치료, 인지 정신 기능훈련

□ 서비스 비용부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란 계약 시 명시된 서비스 외 수급자와 보호자가 요청하는 개인적이고 특수한 서비스를 말한다.

□ 의료 및 건강관리

1. 진찰, 처방, 응급 시 이송대책 등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협력의료기관 시설 방문, 시설의 간호(조무)사 입소자 건강 상태 및 건강기록부 확인, 시설 응급환자에 대한 후송 및 진료 협조, 상시적인 의료상담을 협조 받는다.
2. 수급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즉시 보호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 보호자는 이를 통보받았을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 시설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3. 시설은 서비스 제공 도중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4. 시설에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사들은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한다.

□ 응급 시 조치

1. 시설은 수급자의 생명이 응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는 협약병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보호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때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가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시설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시설은 타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갑)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더나은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더나은 주간보호센터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② 수급자가 보호자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